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5.9.12.(금) 조간	배포	2025.9.11.		
담당부서	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	책임자	팀 장	허승환	(02-3145-6702)
		담당자	선 임	황태현	(02-3145-6705)
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2팀	책임자	팀 장	김수진	(02-3145-8285)
		담당자	조사역	김태기	(02-3145-8523)

안전지대 없는 금융사기 - 금융회사 사칭 홈페이지·이메일 주의하세요

■ 소비자경보 2025 - 21호

등급	주의	경고	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

소비자경보 내용

-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**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**(fine.fss.or.kr)의 '제도권 금융회사 조회*' 메뉴에 **금융투자 사기**에 악용할 목적으로 불법업자의 이메일을 등록하려는 시도가 적발되었습니다.
 - *「제도권 금융회사 조회」: 인허가 및 등록신고된 금융기관명 및 홈페이지·이메일·연락처 안내
 - 우리원의 기민한 대처로 불법 시도는 저지되었으나,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예방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중인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한 **불법행위**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**유의**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실제로도, 불법업체는 금융회사의 **명의를 도용**한 **가짜 홈페이지**를 **개설**한 후 고수익을 미끼로 계좌개설과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였고
 - 홈페이지에 접속한 금융소비자는 투자금을 송금한 후 반환받지 못하는 금융투자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.
-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**온라인 투자사기**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**주의**가 필요합니다.

〈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〉

- ① **온라인**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믿고 금융투자 거래는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. 금융회사의 **공식 채널**(전화, 이메일, 홈페이지 등)을 통한 **추가 확인**이 필요합니다!
- ② 온라인 투자성공 후기는 **불법업체**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**유념**하고, 금융회사가 **온라인 상담**만으로 지정 계좌에 입금을 유도하지 않음을 **명심**하세요!
- ③ **불법업자**로 의심되면,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**신고**하세요!

I. 금융감독원의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시도

□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인 '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(fine.fss.or.kr)'은 **전 국민**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음

○ 특히, 「제도권 금융기관 조회」 메뉴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세정보*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

* 인허가 및 등록신고된 제도권 금융기관명과 주소·홈페이지·연락처·이메일 등 확인 가능

<금융소비자 정보포털 「FINE」 - '제도권금융회사' 조회 화면>



□ 「제도권 금융기관 조회」 메뉴에서 검색되는 특정 금융회사의 이메일 정보란에 금융범죄에 이용할 불법업자의 이메일*을 등록하기 위해

* 온라인 플랫폼사가 금융광고주 사전심사시 확인하는 이메일로,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금융광고를 게재하려는 목적으로 추정

○ 해당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위조된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하면서 이메일 등록을 요청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접수

※ 민원 처리과정에서 불법행위 시도는 저지되었으며,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

<불법업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등록 시도>

운용 주식회사	
영문기관명	
전화번호	02
주소	서울특별시
홈페이지	
이메일	허위 이메일 등록 시도
감독기관	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
허가등록업종	전문사모집합투자업, 투자자문업, 투자일임업
기타	
참고	

☑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불법업자의 이메일 등록을 요청하는 민원 접수

⇒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등을 조회하기 위해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에게 금융사기 시도

Ⅱ. 금융회사 명의 도용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금융투자 사기 행태

- ① 불법업자의 이메일 등록 시도가 있었던 해당 금융회사(자산운용사) 정보를 도용한 홈페이지 개설 및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

※ 실제 명의 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금을 송금한 투자자 피해 사례 발생

< 금융회사 명의 도용 홈페이지 >



※ 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식 금융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이사명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오인시키고 계좌개설 및 송금 유도

- ☑ 명의가 도용된 홈페이지는 즉시 접속을 차단*하였으나, URL을 변경하며 지속 개설
- *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 의뢰
- ⇒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기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

- ② 불법업자는 유튜브, 블로그 등에 “미국 증권사의 국채펀드 투자방법”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대량 게재하는 방식으로 사칭 홈페이지에 접속을 유도

< 유튜브에 게재된 투자권유 영상 >



※ 불법업체는 경제·재테크 전문가를 사칭하며 유튜브 채널에 다수의 재테크 정보와 투자권유 영상 등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

<참고 ①> 투자자 피해 발생 사례

- 피해자 A씨는 우연히 유튜브에 게재된 “미국 국채펀드 투자”를 권유하는 영상을 보고, **영상의 안내에 따라 사칭 홈페이지에 접속**
 - 월 1%가 넘는 고수익과 원금이 보장된다는 **상품설명**을 믿고 투자금 총 3천만원을 불법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
 - 첫 달 **이자 명목**으로 불법업체로부터 30만원을 지급 받음
 - 피해자는 확인 차원에서 **명의를 도용된 금융회사**에 연락하였고, 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체임을 확인한 후 **환매**를 신청
 - 불법업체는 15일 후 환매가 이루어진다고 안내하였으나, 환매 조치 없이 **연락두절 및 잠적** 상태

<참고 ②> 유사 피해사례 : 해외 금융회사 명의 도용

- 상기 사례와 유사하게 금융회사 사칭 후 투자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온라인 투자사기 피해사례가 금융감독원에 다수 접수
 - 불법업체는 해외 금융회사 사칭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연 11~14%의 안정적 고수익을 제시하며 “**해외채권 펀드**”를 판매 중

※ 상기 금융회사 사칭 사기와 동일수법으로 유튜브·블로그 등을 통해 투자자 유인

< 해외 금융회사 정식 홈페이지 >



< 해외 금융회사 사칭 홈페이지 >



Ⅲ. 소비자 유의사항

- ① 최근 **금융회사 사칭**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**온라인 금융사기**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**주의**가 필요
- ②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이용한 계좌개설 또는 자금이체 등 금융 거래는 투자사기의 위험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**공식적인 복수 채널**(전화, 이메일, 홈페이지 등)을 통해 직접 **확인**할 필요
- ③ 금융회사가 대면 또는 유선 상담 없이 **온라인**(이메일·유튜브 등)으로만 접근하여 **입금**을 **유도**하는 경우에는 투자금만 편취(일명 ‘먹튀’)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
- ④ 온라인에서 접하는 **투자성공 후기**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을 의심

< 불법업체의 허위 투자성공 후기 영상 사례 >



- ⑤ **사기**가 의심되면, 즉시 **거래**를 **중단**하고 관계회사에 유선 확인 및 경찰청(☎112) 또는 금융감독원*(☎1332)에 신속하게 **신고***

* 금감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민원.신고 → 불법금융신고센터 →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